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0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공원 내 신설·철거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비함.
- 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2.10.)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내 풋살 경기장, 축구교육장, 드론장을 공원이용시설에 추가하고,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등 시설을 삭제함(안 별표 1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
- 나. 국궁장, 축구교육장, 상상마루[독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장한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의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 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제외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를 신설(명시)함(안 제17조 제1항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 2) 「도로교통법」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12. 17.~'21. 1. 6.)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다.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공사·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별표 1의 표 제2호의 공원시설물란 가목 중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장, 풋살 경기장, 축구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공원시설물란

나목 중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를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공원시설물란 중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MTB코스장”을 “MTB코스장”으로, “모형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드론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 테니스장란 아래에 국궁장란과 축구교육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4,000~7,000원
	코스체험 1회	4,000~7,000원
	1개월	40,000~60,000원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주 1회 50분 기준)	60,000~80,000원

별표 2 제3호의 표 캠핑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캠핑장	캠핑장	1면당(1박 기준)	13,000~25,000원	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글램핑장	1면당(1박 기준)	80,000~120,000원	
	캠프시설	개소당(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5,000~20,000원	

별표 2 제5호의 표 야외무대사용란 아래에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상상마루 (뚝섬 자별레 (서울생각마루) 3층)	자유석(1석당)	40,000~70,000원	5,000~10,000원/일	
	1인석(마루 1~5)	50,000~90,000원	5,000~15,000원/일	
	모임공간 (마루6~7)	100,000~180,000원	5,000~20,000원/일	
	회의실(마루 8)	-	5,000~15,000원/1시간	

별표 2 제6호의 표 중 자전거대여소의 기준 및 이용료란 1시간 기준 및 추가요금(15분당)의 ·2인승 항목 아래에 ·기타 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이색자전거 체험장란 및 레일바이크란을 각각 삭제한다.

· 기타	4,000~5,000원
------	--------------

· 기타	1,000~1,500원
------	--------------

별표 2 제8호의 표 중 거북선관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 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u>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7조(금지행위) ① ----- ----- -----.</p> <p>10. ----- ----- -----.</p> <p><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가. <u>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나. <u>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다. <u>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공사·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라.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략)</p> <p>[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1. 수상이용시설</td> <td>(생략)</td> </tr> <tr> <td>2. 체육시설</td> <td>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u>게이트볼장</u>,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X-게임장, 론볼링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 (생략)</td> </tr> <tr> <td>3. 휴양시설</td> <td>(생략)</td> </tr> <tr> <td>4. 학습시설</td> <td>(생략)</td> </tr> <tr> <td>5. 시민편의시설</td> <td>가. (생략) 나. 교량전망카페,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 야외원형극장, 야외무대 다. (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생략)	2. 체육시설	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u>게이트볼장</u> ,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X-게임장, 론볼링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 (생략)	3. 휴양시설	(생략)	4. 학습시설	(생략)	5. 시민편의시설	가. (생략) 나. 교량전망카페,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 야외원형극장, 야외무대 다. (생략)	<p><u>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1. 수상이용시설</td> <td>(생략)</td> </tr> <tr> <td>2. 체육시설</td> <td>가. ----- ----- ----- <u>게이트볼장</u>, <u>풋살 경기장</u>, <u>축구교육장</u>, ----- ----- ----- ----- ----- 나. (현행과 같음)</td> </tr> <tr> <td>3. 휴양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4. 학습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5. 시민편의시설</td> <td>가. (현행과 같음) 나. -----, <u>뚝섬 자벌레</u> (<u>서울생각마루</u>), ----- ----- 다.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생략)	2. 체육시설	가. ----- ----- ----- <u>게이트볼장</u> , <u>풋살 경기장</u> , <u>축구교육장</u> , ----- ----- ----- ----- ----- 나. (현행과 같음)	3. 휴양시설	(현행과 같음)	4. 학습시설	(현행과 같음)	5. 시민편의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u>뚝섬 자벌레</u> (<u>서울생각마루</u>), ----- ----- 다. (현행과 같음)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생략)																								
2. 체육시설	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u>게이트볼장</u> ,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X-게임장, 론볼링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 (생략)																								
3. 휴양시설	(생략)																								
4. 학습시설	(생략)																								
5. 시민편의시설	가. (생략) 나. 교량전망카페,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 야외원형극장, 야외무대 다. (생략)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생략)																								
2. 체육시설	가. ----- ----- ----- <u>게이트볼장</u> , <u>풋살 경기장</u> , <u>축구교육장</u> , ----- ----- ----- ----- ----- 나. (현행과 같음)																								
3. 휴양시설	(현행과 같음)																								
4. 학습시설	(현행과 같음)																								
5. 시민편의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u>뚝섬 자벌레</u> (<u>서울생각마루</u>), -----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6. 유희시설</td> <td>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공원(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MTB코스장, 익스트림장, 자전거교육장 등), 모형항공기 이착륙 시설, 레이싱경기장, 자전거대여소 나. (생략)</td> </tr> <tr> <td>7. 공원편의시설</td> <td>(생략)</td> </tr> <tr> <td>8. 조경시설</td> <td>(생략)</td> </tr> <tr> <td>9. 그 밖의 시설</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p> <p>1. (생략) 2. 체육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기 준 및 이 용 료</th> </tr> </thead> <tbody> <tr> <td>축 구 장</td> <td>(생략)</td> </tr> <tr> <td>야구야구장</td> <td>(생략)</td> </tr> <tr> <td>성인야구장</td> <td>(생략)</td> </tr> <tr> <td>배 구 장</td> <td rowspan="3">(생략)</td> </tr> <tr> <td>족 구 장</td> </tr> <tr> <td>농 구 장</td> </tr> <tr> <td>테니스장</td> <td>(생략)</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6. 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공원(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MTB코스장, 익스트림장, 자전거교육장 등), 모형항공기 이착륙 시설, 레이싱경기장, 자전거대여소 나. (생략)	7. 공원편의시설	(생략)	8. 조경시설	(생략)	9. 그 밖의 시설	(생략)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생략)	야구야구장	(생략)	성인야구장	(생략)	배 구 장	(생략)	족 구 장	농 구 장	테니스장	(생략)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6. 유희시설</td> <td>가. ----- (MTB코스장, -----), 드론장, ----- ----- 나. (현행과 같음)</td> </tr> <tr> <td>7. 공원편의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8. 조경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9. 그 밖의 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기 준 및 이 용 료</th> </tr> </thead> <tbody> <tr> <td>축 구 장</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야구야구장</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성인야구장</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배 구 장</td> <td rowspan="3">(현행과 같음)</td> </tr> <tr> <td>족 구 장</td> </tr> <tr> <td>농 구 장</td> </tr> <tr> <td>테니스장</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국공장</td> <td>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td> <td>4,000~7,000원</td> </tr> <tr> <td>1개월</td> <td>4,000~7,000원 40,000~60,000원</td> </tr> <tr> <td>축구</td> <td>1개월(월 4회, 주</td> <td>60,000~8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6. 유희시설	가. ----- (MTB코스장, -----), 드론장, ----- ----- 나. (현행과 같음)	7. 공원편의시설	(현행과 같음)	8. 조경시설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시설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현행과 같음)	야구야구장	(현행과 같음)	성인야구장	(현행과 같음)	배 구 장	(현행과 같음)	족 구 장	농 구 장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국공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4,000~7,000원	1개월	4,000~7,000원 40,000~60,000원	축구	1개월(월 4회, 주	60,000~80,000원
구 분	공원시설물																																																												
6. 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공원(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MTB코스장, 익스트림장, 자전거교육장 등), 모형항공기 이착륙 시설, 레이싱경기장, 자전거대여소 나. (생략)																																																												
7. 공원편의시설	(생략)																																																												
8. 조경시설	(생략)																																																												
9. 그 밖의 시설	(생략)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생략)																																																												
야구야구장	(생략)																																																												
성인야구장	(생략)																																																												
배 구 장	(생략)																																																												
족 구 장																																																													
농 구 장																																																													
테니스장	(생략)																																																												
<신 설>																																																													
<신 설>																																																													
구 분	공원시설물																																																												
6. 유희시설	가. ----- (MTB코스장, -----), 드론장, ----- ----- 나. (현행과 같음)																																																												
7. 공원편의시설	(현행과 같음)																																																												
8. 조경시설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시설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현행과 같음)																																																												
야구야구장	(현행과 같음)																																																												
성인야구장	(현행과 같음)																																																												
배 구 장	(현행과 같음)																																																												
족 구 장																																																													
농 구 장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국공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4,000~7,000원																																																											
	1개월	4,000~7,000원 40,000~60,000원																																																											
축구	1개월(월 4회, 주	60,000~80,000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및 이용료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배드민턴장	(생략)	교육장	1회 50분 기준) 원
이촌안타인 롤러스케 이트장	(생략)	배드민턴장	(현행과 같음)
비고 : (생략)		이촌안타인 롤러스케 이트장	(현행과 같음)
3. 휴양시설		3. 휴양시설	
구분	기준 및 이용료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캠핑장	1박 기준 1면당	캠핑장	1면당 (1박 기준)
	단체(1면당)		1면당 (1박 기준)
			개소당 (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강변 물놀이장	(생략)	강변 물놀이장	(현행과 같음)
수영장	(생략)	수영장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시민편익시설		5. 시민편익시설	
구분	기준 및 이용료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야외 원형극장	(생략)	야외 원형극장	(현행과 같음)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캠핑장	1박 기준 1면당	단체는 30인 이상으 로 하 되, 중 학생 이하만 적용한 다.
	단체(1면당)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캠핑장	1면당 (1박 기준)	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고, 그 밖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1면당 (1박 기준)	
	개소당 (바비큐, 캠프파이 어 등)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및 이 용 료	비 고	(현행과 같음)			
야외 원형극장	(생략)					
야외무대 사 용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뜯섬 자벌레 (서울생각 마루) 3층]	자유석 (1석당)	40,000 ~ 70,000원	5,000 ~ 10,000원/일
				1인석 (마루 1~5)	50,000 ~ 90,000원	5,000 ~ 15,000원/일
				모임공간 (마루 6~7)	100,000 ~ 180,000원	5,000 ~ 20,000원/일
				회의실 (마루 8)	-	5,000 ~ 100원/시간
6. 유희시설			6. 유희시설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1인승 ·2인승 <신설> 추가요금(15분당)	2,700~3,800원 5,400~7,600원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1인승 ·2인승 ·기타 추가요금(15분당)	2,700~3,800원 5,400~7,600원 4,000~5,000원	
	·1인승 ·2인승 <신설>	500~700원 1,000~1,500원 <신설>			·1인승 ·2인승 ·기타	500~700원 1,000~1,500원 1,000~1,500원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1,500 원	6세미만 어린이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삭제>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생략)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현행과 같음)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1,000~3,000 원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기타				8. 기타			
구분	기준 및 이용료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영화촬영	(생략)			영화촬영	(생략)		
녹화	(생략)			녹화	(생략)		
거북선관람	어린이(6~12세) ·1회	300~400원		<삭제>			
	청소년(13~18세) ·1회	700~1,000원					
	성인(19세이상) ·1회	1,000~1,500원					
잔디발행사	(생략)			잔디발행사	(생략)		
				도로점용	(생략)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도로점용 행	(생략)	행 사	
입 장 권 발매행사	(생략)	입 장 권 발매행사	(생략)
서울함공원	(생략)	서울함공원	(생략)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신설·철거된 공원이용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조례 별표2에 명시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심정은 ☎ 02-3780-0752